
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
(앞쪽)

1. 기본사항

① 법인명	SINGAPOR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LTD(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)	② 사업자등록번호 (고유번호)	199301198G
③ 대표자 성명	양미숙	④ 공익법인등 구분	한국학교
⑤ 전자우편주소	account@skis.kr	⑥ 사업연도	2022-2
⑦ 전화번호	65-6741-0778	⑧ 공익법인등 지정일	2019-06-28
⑨ 소재지	71 Bukit Tinggi road		

2. 기부금의 수입·지출 명세

(단위: 원)

⑩ 월별	⑪ 수입	⑫ 지출	⑬ 잔액	월별	수입	지출	잔액
전기이월	-	-	32,764,800	10월	0	0	43,612,650
3월	9,640,320	0	42,405,120	11월	216,000	0	43,828,650
4월	0	480,190	41,924,930	12월	0	36,480	43,792,170
5월	0	0	41,924,930	1월	0	0	43,792,170
6월	248,680	3,841,920	38,331,690	2월	9,846,720	0	53,638,890
7월	0	0	38,331,690	합계	25,232,680	4,358,590	
8월	5,269,440	0	43,601,130	차기이월	-	-	53,638,890
9월	11,520	0	43,612,650				

3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내사업)

(단위: 원)

⑭ 지출월	⑮ 연도별	⑯ 지급건수	⑰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⑱ 금액
합 계				

4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외사업)

(단위: 원)

⑳ 지출월	㉑ 국가명	㉒ 지급목적	㉓ 지급건수	㉔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㉕ 금액
2022-04	싱가포르	학생장학금(은행수수료 포함)	2	SKIS STUDENT	480,190
2022-06	싱가포르	학생장학금(은행수수료 포함)	5	SKIS STUDENT	3,841,920
2022-12	싱가포르	은행수수료	1	OCBC BANK	36,480
㉖ 연도별	㉗ 국가명	㉘ 지급목적	㉙ 수혜인원	㉚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㉛ 금액
2022	싱가포르	학생장학금(은행수수료 포함)	7	SKIS STUDENT	4,322,110
	싱가포르	통장 수수료	1	OCBC BANK	36,480
합 계			7		4,358,590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
2023년 4월 13일

제출인: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장 양미숙 (직인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절지 80g/㎡]



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

1. 단체 기본사항		사업연도	2022.3.1. ~ 2023.2.28.(12개월)
① 법인(단체)명	SINGAPOR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LTD(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)	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	199301198G
③ 대표자 성명	양미숙	④ 해외 한국학교 지정일	1993.2.17
⑤ 소재지	Bukit Tinggi Road 71 Singapore 289759 (전화번호 : 070-4063-3995)	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https://skis.kr

2.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

⑦ 지정 요건 및 의무	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	⑨ 점검결과
가.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(재외국민에게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)일 것	○	
나.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)	○	
다.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	○	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9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.

2023년 4월 13일

제출인 :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장



교육부 장관 귀하

위 해외 한국학교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 제10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(통보기관의 장)

[인]

국세청장 귀하

작성 방법

-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해외 한국학교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-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해외 한국학교가 작성하며,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

1. 단체 기본사항		사업연도	2022.3.1. ~ 2023.2.28.(12개월)
① 법인(단체)명	SINGAPOR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LTD(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)	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	199301198G
③ 대표자 성명	양미숙	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	지정일 : 2019-06-28 만료일 : 2024-12-31
⑤ 소재지	Bukit Tinggi Road 71 Singapore 289759(전화번호 : 070-4063-3995)	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https://skis.kr

2. 의무이행 여부

⑨ 의무		⑩ 의무이행 여부	⑪ 점검결과
⑦	가.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(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9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)	○	
	나.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	○	
	다-1.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	○	
	다-2.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	○	
⑧	라.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	○	
	마.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	○	
	바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	—	—
	사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	—	—
	아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	—	—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6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.

2023. 4. 13 일

제출인 :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장 (인)

교육부 장관 귀하

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6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(통보기관의 장)

[인]

국세청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(마목 제외)의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2. ④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은 지정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됩니다.
 - 다만,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(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)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.
3. ⑦의 검토 항목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의 공익법인만 해당합니다. 다만, ⑦의 검토 항목 중 '가'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익법인등도 해당됩니다(실제운영상 수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).
4. ⑧ 검토 항목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가목~바목(마목 제외)의 공익법인등이 해당합니다.
5. ⑩의 의무이행 여부란은 공익법인등이 작성하며, ⑪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